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변경 내용 및 FAQ

2014.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목 차

I . 자격기준 변경 주요 내용	1
-------------------------	---

II . FAQ

1. 공통 시행법 적용시점, 자격신청시기 등	4
-------------------------------	---

2. 어린이집 원장 자격 관련	7
------------------------	---

3. 보육교사 자격 관련	10
---------------------	----

4. 기타	14
-------------	----

I. 자격기준 변경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보육교사 2급 및 일반·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득 시, **최소 업무 경력요건 강화** ('14.3.1.~)
 - * 일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 2년 → **3년**), 가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2급 + 2년 → **보육교사 1급 + 1년**),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 1년 → **2년**)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도입 ('14.3.1.~)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조항 삭제
- 경력인정 범위에서 직종을 제한하여 **경력으로 인정**('14.3.1.~)

□ 보육교사 자격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14.3.1)
보육교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 보육업무 경력 3년 + 1급 승급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보육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보육관련 학점 이수 (12과목 35학점 이상) ▪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 1년 + 2급 승급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보육관련 학점 이수 (17과목 51학점 이상) ▪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 2년 +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 수료 (25과목 65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14.3.1)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2년 ▪ 유치원정교사 2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5년 ▪ 유치원원장 자격 ▪ 초등학교 정교사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5년 ▪ 사회복지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5년 ▪ 간호사 면허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7년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3년 ▪ 유치원정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3년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 보육업무 경력 2년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 보육업무 경력 1년 ▪ (현행과 동일)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p style="text-align: center;">영아전담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면허 + 아동간호업무 경력 5년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아전담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어린이집 원장자격 + 장애 관련 학과 전공 ▪ 일반어린이집 원장자격 + 장애아어린이집 보육업무경력 2년 ▪ <u>일반어린이집 원장자격 + 장애아보육직무교육 이수</u>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삭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11.128. 개정, '14.3.1. 시행 등

□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주요 변경 사항

현행

[별표 4] <개정 2009.7.3>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 과목 (학점)
보육기 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u>아동발달(론)</u> , 보육과정	4과목(<u>12학점</u>)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u>특수아동지도</u>	1과목(<u>3학점</u>)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u>아동음악과 동작</u> , 아동미술, <u>아동수·과학지도</u>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u>9학점</u>)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u>6학점</u>)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u>자원봉사(론)</u> , 보육정책(론), <u>보육교사(론)</u> ,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u>3학점</u>) 이상 선택
보육 실습	보육실습	1과목(<u>2학점</u>)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변경("14.3.1)

[별표 4] <개정 2011.12.8>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 과목 (학점)
보육필 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u>영아발달</u> , <u>유아발달</u> , 보육과정, <u>보육교사론</u>	6과목(<u>18학점</u>)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u>특수아동이해</u> , 장애아지도	1과목(<u>3학점</u>)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u>아동음악</u> , <u>아동동작</u> , 아동미술, <u>아동수학지도</u> ,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u>18학점</u>)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u>6학점</u>)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u>3학점</u>) 이상 선택
보육 실습	보육실습	1과목(<u>3학점</u>)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 별표4("11.12.8. 개정) 및 부칙 제3조

II. FAQ

1 공통사항

【 법 적용 시점 】

Q1. 2014. 3. 1. 전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강화된 자격기준을 적용받는지?

- 자격검정은 자격 신청시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14. 3. 1. 전, 당시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2014. 3. 1. 이후 자격을 신청하면,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만, 2005. 1. 30. 전 당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 제3조에 따라 2014. 3. 1. 이후에도 2005.1.29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격 신청 시기 】

Q2. 변경 기준 시행 전, 기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 마감일은?

- 2014. 3. 1. 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 기준 시행('14. 3. 1.)전, 당시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2014. 3. 1. 이후에 자격증 신청을 할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자격검정 및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 기준이 시행되기 전(2014. 2. 28.까지)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은 경력요건 등의 자격기준이 충족되기 이전에도 가능하오니 변경 전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2014. 2. 28.까지 인터넷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경력요건이 충족되기 전 자격증을 신청하였다면, 자격기준에 명시된 경력기간 동안 근무하여 경력요건을 충족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경력 인정 】

Q1. 자격기준 적용 시 “1년” 경력의 인정 기준은?

- 업무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2013. 3. 1.에 임용된 사람은 2014. 2. 28.까지 계속 임용되어 근무하여야 “1년”의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 한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해 경력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면 시·군·구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변경되는 자격기준에 따른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기준은?

○ 2014. 3. 1. 이후 변경되는 자격기준에 따른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변경
<p>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p> <p>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u>보육시설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u></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u>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u></p> <p>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u>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u></p> <p>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 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p> <p>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p> <p>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p>	<p>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p> <p>가. 어린이집에서 <u>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u>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u>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u></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u>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u>로 근무한 경력</p> <p>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u>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u>으로 근무한 경력</p> <p>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 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p> <p>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u>유치원 과정</u>)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p> <p>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p> <p>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p>

○ 변경된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직종인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에듀케어 강사 등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변경되는 자격기준에 따른 “보육업무 경력” 인정 기준은?

- 2014. 3. 1. 이후 변경되는 자격기준에 따른 “보육업무 경력” 인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변경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u>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u>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u>

- 변경된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직종인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 원장 자격 관련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변경】

Q1. 금번 변경되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이 기존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신청 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신청 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Q2. 금번 변경되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기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신청 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Q3. 금번 변경되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이 기존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며, 자격증 신청 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Q4. 금번 변경되지 않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신청 시에도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2014. 3. 1. 이후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증 신청 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Q1.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세부 자격기준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 ‘가’-일반어린이집원장, ‘나’-가정어린이집원장, ‘다’-영아전담어린이집원장, ‘라’-장애아전담어린이집원장

- 기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2014. 3. 1. 이후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3. 1. 전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가 2014. 3. 1. 이후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2.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횟수는?

- 원장사전직무교육은 개정법 시행이후 원장 자격발급을 위한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Q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개설 교육기관과 교육신청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타 보수교육과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며, 상세 문의는 해당 시·도로 하시면 됩니다.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도 시도별 교육계획을 파악하여 안내할 예정
- '14년 3월이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관리를 위해 구축중인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신청부터 이수관리 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하시면 됩니다. ('14.3월초 별도 공지 예정)

3 보육교사 자격 관련

【보육교사 자격 기준 변경】

Q1. 금번 변경되는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은?

- 기존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2. 보육교사 1급 및 3급 자격 기준 변경사항은?

- 급변 자격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1급 및 3급 취득 관련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2013년 제4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의해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적용되는 '보육 관련 대학원'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 관련 대학원이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 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 위 '보육 관련 대학원'의 인정 기준은 2014. 3. 1.이후 해당 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변경 전 기준에 따라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변경 전 당시(2014. 2. 28.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교과목 및 학점 기준 적용】

Q1. 예를 들면 '13년 3월 대학을 입학한 자가 이수해야하는 교과목 및 학점은?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호,2011.12.8> 제3조에 의해 '13년 3월에 대학을

입학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이 적용되므로,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 2014. 1. 1.이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등은 Q2참조)에 입학한 사람부터는 개정 기준에 따른 교과목 기준(17과목 51학점이상)이 적용됩니다.

Q2. 학점은행제를 통해 '14년 3월 이후 학위를 취득하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교과목 및 학점은?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호,2011.12.8> 제3조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4. 3. 1.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기준(12과목 35학점이상)을 갖추면 될 것이나, 2014. 3. 1. 이후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변경 기준(17과목 51학점 이상)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 이때, 변경 기준(17과목 51학점 이상)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가 개정법 시행일 전(2014. 2. 28.까지)에 법 개정으로 분리될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변경 기준에 따라 분리된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법 개정으로 분리될 교과목 : 아동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 · 과학지도

· 변경 전 기준에 따른 교과목명	→	· 변경 기준에 따른 교과목 명
아동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음악과 동작	→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수 · 과학지도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관련 근거 : 2013년 제3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예를 들어, 2014년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기준(17과목 51학점 이상)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이나, 2014년 2월에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변경 기준에 따른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한 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Q3. '14년 2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 이수는 하였으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자격 발급이 가능한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상이므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2014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 기준에 의한 자격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2014. 3. 1. 이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17과목 51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금번 변경되는 보육 관련 교과목 중 별도 심의없이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 변경 기준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 중 별도의 심의없이 인정되는 유사교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역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개정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위의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은 금번 변경에 따라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목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해 유사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인정여부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변경 전 기준에 따른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보육 관련 교과목' 참고

Q1.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자격 인정자에 대한 발급은?

- 자격 발급은 자격 신청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검정하고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 제3조에 따라 종전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86호)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에 따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당시 법령에 따라 자격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005. 1. 29.이전 규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대상자의 기준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자격기준' 참고

Q2. 기타 자격 발급 관련 상세 문의처는?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신청 및 발급, 세부 참고자료에 대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1661-5666)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